

※ 노부모양 특별공급·일반공급 가점기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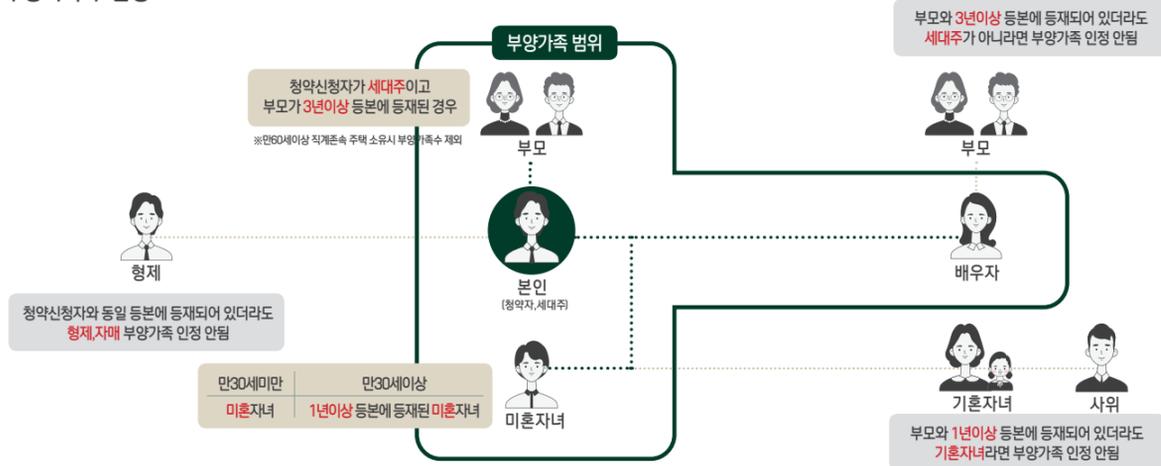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비고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 (또는 유주택자)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- 주민등록등본 (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-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 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		
② 부양가족 수	35	0명	5	4명	25	- 주민등록표등본 - 가족관계 증명서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- 만 18세 이상 생년월일 부양가족인정신청서 추가 확인 서류 (1)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: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 (2) 만 30세 이상: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-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)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		
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		
총 배점	84	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+②+③				

※ 무주택기간 산정

과거 주택소유여부	혼인 여부	무주택기간	비고
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주택소유이력 無 (분양권등 포함)	청약 신청자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 X	만 30세 무주택기간 모집공고일	만 30세가 된 날 ~ 모집공고일
	청약 신청자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 O	혼인신고일 만 30세 무주택기간 모집공고일	혼인신고일 ~ 모집공고일
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주택소유이력 有 (분양권등 포함)	청약 신청자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 X	만 30세 무주택기간 모집공고일	만 30세가 된 날 or 가장 최근 무주택자 된 날 중 늦은 날 ~ 모집공고일
	청약 신청자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 O	등기접수일(매도) 만 30세 무주택기간 모집공고일	혼인신고일 or 가장 최근 무주택자 된 날 중 늦은 날 ~ 모집공고일

※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기준
 ※ 주택의 공유지분,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
 ※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
 ※ 일반공급: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 / 노부모 특별공급: 청약신청자, 배우자, 피부양 직계존속

※ 부양가족 수 산정



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청약안내문

■ 분양일정

구분	입주자 모집공고	건분주택 예약관람	특별공급	일반1순위		일반2순위	당첨자발표	당첨자 서류접수 (예비입주자 일부)	계약체결
				해당지역	기타지역				
일정	02월 25일(목)	03월 05일(금) ~ 03월 14일(일)	03월 15일(월)	03월 16일(화)	03월 17일(수)	03월 18일(목)	03월 24일(수)	03월 26일(금) ~ 03월 31일(수)	04월 05일(월) ~ 04월 09일(금)

■ 세대수 안내

구분	75	76	84A	84B		
기관추천	국가유공자	4	1	2	5	
	장기복무 제대군인	1	1	1	1	
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1	1	1	1	
	중소기업 근로자	1	1	1	1	
	장애인	3	1	2	3	
다자녀가구	-	13	4	9	16	
신혼부부	소득기준	우선공급(70%)	18	7	13	23
		일반공급(30%)	7	2	5	9
노부모부양	-	4	1	2	5	
생애최초	소득기준	우선공급(70%)	7	3	5	8
		일반공급(30%)	2	-	1	3
일반공급	-	64	19	45	81	

■ 청약예치기준 금액

구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
■ 인터넷 청약방법

◆ 특별공급

◆ 일반공급

■ 청약신청서 유의사항

- 해당지역 청약 가능 대상: 대전광역시에 2020.02.25.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.
-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2.25.) 현재 세대주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합니다.
- 1순위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(단,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)
- 부양가족 산정 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.
- 1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,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,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)
- 소형·저가 주택의 무주택판단 사례는 모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(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.
-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혼인기간 내 자녀가 있고, 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2.25.)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가 혼인중이거나,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 가능합니다.
-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(무주택판단 사례 해당 시 무주택 간주)

01. 기관추천 특별공급

◆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주택세대구성원 ③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시에 통보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

◆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

① 해당기관 신청	② 해당기관 대상자 선정	③ 선정된 고객 인터넷 청약
※ 기관별 해당기관에 청약신청 ※ 미신청 시 접수 불가	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	당첨자(예비포함)로 선정된 고객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필수 ※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추첨 불가

02.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
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 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① 청약신청자의 자녀 :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 ② 재혼배우자의 자녀 :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 인정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) 거주자 공급
경쟁시 우선순위	- 경쟁이 있는 경우,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가점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 -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. ※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.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

◆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점기준		비 고
		5명 이상	40	
(1) 미성년 자녀 수	40	4명	3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(태아, 입양, 전혼자녀 포함)
		3명	30	
		3명 이상	15	
(2) 영·유아 자녀 수	15	2명	1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(태아, 입양, 전혼자녀 포함)
		1명	5	
		3세대 이상	5	
(3) 세 대 구 성	5	한부모 가족	5	-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
		10년 이상	20	-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
(4) 무 주택 기간	20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- 성년(만 19세 이상)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-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
		10년 이상	15	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 19세 이상)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※ 대전광역시 거주기간
(5) 해당 사·도 거주기간	15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※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-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 기준
(6) 입주자지속 가입기간	5	10년 이상	5	
계	100			

03. 신혼부부 특별공급

◆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혼인기간 1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③ 「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 → 2018.12.11.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
선정방법	① 우선공급(7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 ② 일반공급(3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 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 미 선정 시 일반공급(30%)에 포함
경쟁시 우선순위	-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재임신, 입양 포함 ※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, 출산,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 ② 2순위 : 무자녀 / 2018.12.11.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 -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.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

◆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「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」

공급유형	구 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우선공급 (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521,048원	7,947,891원	8,374,734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이하	7,236,192원	8,513,046원	8,513,046원	9,025,258원	9,537,469원	10,049,681원
일반공급 (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140%이하	6,030,161원~8,442,224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094,206원~9,931,887원	7,521,049원~10,529,467원	7,947,892원~11,127,047원	8,374,735원~11,724,628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 ~160%이하	7,236,193원~9,648,256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8,513,047원~11,350,728원	9,025,259원~12,033,677원	9,537,470원~12,716,626원	10,049,682원~13,399,574원

- 우선공급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 시 일반공급 30%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)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 - 일반공급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* (N-8), (100%기준)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 수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임. ※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함.(단,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로 인정)

04. 생애최초 특별공급

◆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세대주 ※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혼인(재혼포함)중이거나 출자녀(입양포함, 혼인중이 아닌 경우 등-초본상 등재되어 있는 미혼 자녀) 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※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 ※ 가구원수 선정 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수 선정 ⑦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 -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
유의사항	※ 예비입주자는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, 타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추첨

◆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「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」

공급유형	구 분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130%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777,362원	10,332,258원	10,887,154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130%초과~160%이하	7,839,209원~9,648,256원	9,222,468원~11,350,728원	9,222,468원~11,350,728원	9,777,363원~12,033,677원	10,332,259원~12,716,626원	10,887,155원~13,399,574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* (N-8), (100%기준)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 수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임. ※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.(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)

05.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
◆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(같은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엔 한함) ③ 무주택세대주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직계존속(배우자 포함)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⑤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
우선순위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: 가점제 적용 [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별표1)제2호나목 가점점수 산정기준표] -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: 추첨제 적용
유의사항	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(분양권·입주권 등 포함) ※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·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※ 피부양중인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
06. 일반공급

◆ 일반공급 청약 자격

구 분	내 용	
	1순위	2순위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	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예비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③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 -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구역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① 주택형별 1순위 전체(기타지역 포함) 경쟁이 있는 경우,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%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②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	
유의사항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(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)	